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의안 번호	26263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서삼석·윤재갑·김승남
진성준·소병훈·김정호
신정훈·양정숙·이용선
오영환·이개호·위성곤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액
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
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담은 비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대응책은 오염물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오염
물질이 실제 배출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

법률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
2.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3. 선박의 건조·수리 또는 해체 시설
4.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는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가 해양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集水) 시설

나.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 시설

다.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해양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

④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수리·보수

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실시시기·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을 설치한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6조의3(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의 오염물질저장시설 2.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 시설 3. 선박의 건조·수리 또는 해체 시설 4.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가 해양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다른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集水) 시설
 - 나. 폐수 중 해양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다. 해양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해양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

④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신고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해양오염방지설비의 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실시시기·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